

「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며,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(안 제4조)
- 재정 지원(안 제5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를 규정하고 있고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되거나 소각 시 온실가스, 발암물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군수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 및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4조(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)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우선 게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5조(재정 지원)에서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고,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지방자치법**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
4. **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**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**자연보호활동**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~ 7. (생략)

□ 환경정책기본법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붙임 참고 자료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
조례[2024.12.26.] 외 57건 (강원도 내 없음)
- 폐현수막 현황[2022~2024]

	현수막 생산량(a)	재활용량(b)	폐기량(a-b)
합계	28,804	1,600	27,204
2022	8,346	0	8,346
2023	10,468	1,000	9,468
2024	9,990	600	9,390

※ 현수막 생산량: 게시대 신고 현수막 건수 + 불법 현수막 수거 건수

※ 재활용은 불법 현수막 수거건에 대해서만 실시중이며, 재활용 외에는 매립 처리

□ 기존 현수막 단가 현황

- 일반 현수막 표준단가 : M당 11,000원(*현수막게시대(6M) 기준 66,000원)
- 친환경 현수막 단가 : M당 16,600원 ~ 18,300원(추정)